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5-6호

2025년 서울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	11	N I	711	
- 1	A	·업	개	м

□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
□ 예산규모 : 156.6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5.11.30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 **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
□ 세부사업 : 지역자율형 바우처

□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ightharpoons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ightharpoons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Diamond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2.13. ~ 3.6.		'25.3월		'25.4월 ~		'25.4월말 ~

-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청기간 : '25. 2. 13.(목) ~ '25. 3. 6.(목) 18:00까지
 - o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o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 ㅇ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전 유의사항

- ◆ 신청 전,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내 [메뉴판]-[서비스검색]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 순위작성(사업별 신청서식 참조)
-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수강, 협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하며, 사업 완료 이후, 정산하지 않으면 환수
 - *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3자계약(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
-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 가능
- ◈ 他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 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역자율형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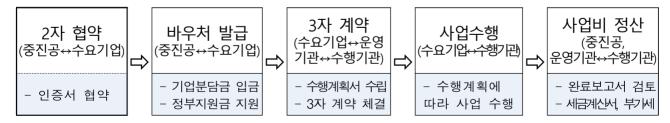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이하의 소기업인 서울 소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 본사, 공장 등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사업자번호가 다른 지점, 공장 등에서 사용 불가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② 패션제조업종*에 해당하며,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이 아닌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리 해당여부 확인 : 별첨4 참조
- **(지원규모)** 156.6백만원
- o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 다만, 융복합컨설팅은 먼저 협업 승인을 득한 이후 기술지원 및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15
기술 지원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회를 위한 전략 수립	15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u>한도</u> (백만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15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마케팅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20
	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o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ㅇ (바우처 사용기간) '25년 11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3	필수 ¹⁾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4	_ =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8		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온라인 작성
9	해당 시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❷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⑥.②.③.⑤.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 ²⁾

-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2) ①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②협업승인 기업,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서울은 위기지원센터 미설치지역으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⑥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②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③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⑨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⑩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⑧)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⑨)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 우대가점 연번⑨(♠~๑)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지역자율형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구역 및 연락처

중진공 지역 본.지부	관할 구역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mark>중구</mark>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02-2106-7454
서울동부지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02-2023-4321
서울서부지부	<mark>금천구</mark>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02-2106-7414 02-2106-7412
서울남부지부	<mark>서초구</mark> , 강남구	02-2023-4335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

별 첨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1】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졸업역	견월	학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대	학력					
.,	77					
丑						
77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71	주요경력					
자	727/89					
동경	⁶ 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2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개월	일
ᄜ	국내						개월	일
매 출 처							개월	일
처	해외						개월	일
	에거						개월	일

4. 주주현황[주식 보유順으로 기재]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참여이력 보유 기업)

참여연도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제		
참여 서비스 (프로그램)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주요 성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과제 이행 결과와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이행수준, 개선 성과,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요성과 및 환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필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희망 수행기관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 내 [메뉴판]-[서비스검색]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한 "6-1.수행 과제"가 가능한 수행기관들을 확인 후 희망 순위를 **필수로 작성. 미등록 기관은 미등록으로 체크**

	जा सन्।	1201	00커설팅	플랫폼 내	V 등록	0201	0V01701	플랫폼 내	V 등록
예시)	컨설팅	1순위	OO컨설팅	등록여부	<i>□ 미등록</i>	2순위	OXゼイゼ	등록여부	<i>□ 미등록</i>

-1 23-1	1 & 61	컨설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0 & 61	컨설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컨설팅	1순위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2순위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기술	1 2 61	기술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0 2 01	기술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1순위				2순위	, – , – –		
지원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_1 _1 _1	1 2 0	마케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 등록	امخما	마케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마케팅	I 순 위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2순위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ナツリゼ 1 世刊	중국역구	⊔ -। <i>তৰ</i>		ナツ/1社 2 七刊	중축역주	☐ -12 -4
v 즈리	※ 즈레케웨셰바 마이카 시험기어 이 마케티 보면 지사보다 ()							
※ 중내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기업은 마케팅 부분 작성불필요							

6-3.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4.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5.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6.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인원 기준
ᆒᄎᅎ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ਗੈਧਗੀਲ ਹੋਣ
매출중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중가액(천원)	재무제표 기준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一 一 世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85%), 3억원~10억원(75%), 10억원~50억원(65%), 50억원~120억원(45%)

120억원 초과(4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시 신청분야 내 '마케팅' 공란

8. 추진일정[빗금색칠 혹은 Bar 표시]

신청분야	'25년								
	1	2	3	4	5	6	7	8	9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중대재해는 마케팅 작성불필요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 내용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연 도	연도 기 :		직 위	비고	
경 력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2】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컨설팅'-경영기술전략 내 융복합 신청희망 기업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협업체	기본정보[신청시,	주관기업이	전담작성
--	-----	-----------	-------	------

Ξ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	생산품
	주관기업*					
협업체						
구성 _참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 기업 대상 실시)

□ 협업 추진체계

기 업 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	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예)마케팅		रा। सः । र ।	,1,11,1, 1,1,1,1,1
	예)디자인		제품사진	상세설명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 B 1	to B	☐ B to C	☐ B to G
협력모델	판로대상	국내			
		국외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수행기관과 협업체 구성은 제한

별 첨2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00 15 1-1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 첨3 명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1년 ~ '23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1년.1.1 이전 설립 기업	- '21년, '22년, '23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1년 설립	- '22, '23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년 매출액		
'23.1月~'23.11月 설립	- '23년 매출액을 '23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3.12月 설립	- '23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4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4년 표준제무제표 발급 전)		
'25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1.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22년, '23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3.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3.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 첨4

패션제조 업종 분류(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산업명	분류코드	분류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X = 1/11/10 /11/2 H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